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0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최보윤·서천호·김미애

정성국 · 김선교 · 박수영

김상훈 • 한지아 • 최수진

김승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,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.

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,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,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,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'무장애 관광'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 로써 장애인,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무장애 관광(관광의 물리적·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)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	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		
개발) ① ~ ③ (생 략)	개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	4		
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			
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			
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			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			
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			
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7. 무장애 관광(관광의 물리적		
	·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		
	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		
	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		
	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		
	<u>것을 말한다) 환경의 조성 및</u>		
	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		